서 관리기관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호활동의 실적을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그 보호활동이 지정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야생동·식물의 입양제 실시)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을 시민이 참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의 관리야생동·식물을 시민이 담당하여 관리하는 관리야생동·식물 입양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①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시민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시장은 자연환경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국제교류 및 협력)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대도시,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시장은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게 자연환경보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6 장 과태료 등

제32조(과태료) ①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보전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의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의 규정은 200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도래 6월 전까지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 검토보고서

검 토 의 견

[총괄부문]

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환경보전법을 1980년대 초에 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기·수질·소음 및 진동 등 오염요인이 각기 이질적인 분야가 1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빈번한 법개정이 있어 왔고, 날로 다양·복잡화되어 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개별법을 제정하여 오염원별로 환경법을 제정하였음.

나.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시켜 대도시의 환경적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96년 5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의 환경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음. 또한 서울시는 환경

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서울특별시장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일산화탄소, 오존 등 6가지 환경기준치를 설정한 바 있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및 환경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가. 질소산화물은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 소각장, 자동차 등에서 고온상태에서 연소될 경우 대기중의 질소와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가 산소와 결합되어 발생하며 이산화질소(NO_2)는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대기중에서는 탄화수소 및 오존(O_3)과 반응하여 광화합성 스모그를 형성하는 대기오염원의 주요인으로 이를 엄격하게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나. 이번 조례의 질소산화물 기준치도 기존시설은 2004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여 5년간 유예시키는 것.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주 배출 원인 경유차량 등(전체 발생량의 80.8%)이 제외되어 발전부문(전체 발생량의 2.9%), 난방부문(전체 발생량의 12.9%)에 불과해 저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되리라 판단되며, 또한 경유차량을 비롯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배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의 관리는 오염원이 배출하는 오염량을 가능한 한 가장 적게 배출하게 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나 이번 조례안에는 질소산화물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배출기준을 조속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유차량 현황을 보면, 전체 차량의 38%로 일본 15%, 말레이시아 19%, 미국 3% 등과 비교하면 경유차량 보유비율이 매우 높고, 차량운행거리, 시간도 일반승용차에 비해 높은 편으로 질소산화물 등 오염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함.

라. 기체연료사용 발전시설, 1일 50톤 이상 규모의 소각장 등 10개소이고, 대부분이 시설부담능력이 있는 사업체이므로 유예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 탈질소 설비를 갖추어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질소산화물의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